

환경교육진흥법 제정의 의의와 추진 경과

최석진 · 신호상 · 이선경 · 이재영 · 조길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공주대 · 청주교대 · 공주대 · 국회환경포럼)

1. 제정의 의의와 경과

<국가환경선언 designtimesp=16053>이나 <새 천년 국가환경비전 designtimesp=16054>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환경교육은 평생교육의 일환으로서 미래 사회에 있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하겠다. 마침내 환경교육진흥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지 4반세기만에 실질적으로 법의 시안을 작성하고 입법화 과정에 착수하게 된 것은 늦은 바 있으나 다행한 일이라고 하겠다.

환경교육진흥법은 환경을 파괴하거나 오염시킨 자들을 처벌하거나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부정적인(negative) 접근이 아니라 인류와 환경의 관계를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결정과 실천을 유도하는 긍정적인(positive) 접근이라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그런 점에서 본 법에 담긴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환경교육 연구의 활성화, 환경교육사 자격증제나 프로그램 인증제가 실현된다면 앞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데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교육진흥법 제정을 위해서 한국환경교육학회는 연구진을 구성하고, 국회환경포럼(대표 : 이정일 국회의원)과 함께 가칭 환경교육진흥법 시안의 개발과, 나아가 실질적인 입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다음은 그 추진 경과이다.

이 법 제정을 먼저, 2001년도 1월에 한국민간환경단체진흥회의 일부 지원을 받아서 기초 연구를 추진하였다. 즉, 선행연구로서, 우리나라에 이미 존재하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 특수교육진흥법, 산업교육진흥법, 영재교육진흥법, 과학교육진흥법, 유아교육진흥법, 이상 여섯 개의 교육진흥법을 분석하여 환경교육진흥법 시안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외국의 환경교육 관련법에 대한 사례 연구를 하였다. 특히 미국의 경우 1970년 처음 환경교육법이 제정된 이후 몇 차례의 개정과 재승인 과정을 거쳐왔다. 다행이 1990년에 제정된 국가환경교육법의 재승인에 관한 공청회가 지난 2000년 여름 동안 개최되어 환경교육법의 필요성, 효과, 고려할 조항 등 본 연구에 중요한 참고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본 학회의 다른 연구진에 의해 2001년 10월에 완료된 제2차 환경교육 중·장기 강화방안 연구의 결과물도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시안에 담아야 할 내용과 방향을 결정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으며, 이를 토대로 연구진과 국회환경포럼의 환경교육 활성화위원회의 위원이 윤독과 수정을 거쳐 시안의 타당성과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작성된 시안에 대해서는 먼저 국내의 환경 또는 환경교육 관련 전문가에게 설문지를 보내어 의견 수렴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시안에 포함된 대부분의 항목에 대해 높은 찬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수정, 보완 요청 사항을 정리하여 시안에 반영하였다.

2001년 10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공청회를 통하여 다양한 이해집단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공청회 동안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최종 시안을 작성하였다.

2001년 12월에 시안을 완성하고 1차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미진한 점들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국회에는 상정을 못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마련된 환경교육진흥법 최종 시안은 제1조 목적에서 제11조 환경교육연구의 진흥에 이르기까지 총11조로 구성되었으며, '환경교육사' 자격증제 및 환경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등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1992년 6차

교육과정에서

세계 처음으로 '환경' 과목이 독립되는 것만큼의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환경교육진흥법의 주무 부처를 환경부로 제안한 것은 기존은 교육진흥법이 모두 교육 인적자원부를 주무로 하고 있는 것에 비해 매우 특기할 만 하다. 그 이유는 환경교육이 갖고 있는 특수성 때문이다.

2002년 1월에 다시 한국민간환경단체진흥회의 일부 지원을 받아서, 추가 연구와 더불어 입법화와 세부 시행 방안 개발 노력을 전개하였다.

2002년 5월중에 국회환경포럼과 공동으로 다수의 환경민간단체 대표를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였다.

동년 7월에는 이렇게 작성한 시안을 환경부에 보내서 최종 검토와 의견을 구하였다. 그리고 주요 민간환경단체 대표로부터 제정 건의문을 작성하는 작업을 전개하였다.

그 후에 이를 확정하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하려고 했으나, 국회와 기타 여러 가지 사정상 금년에 상정을 보류하고 내년초의 국회 회기에 국회환경포럼과 공동으로 제안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동 법 추진에 따른 세부 내용을 보완하는 2차 연도 보고서를 2003년 1월에 발간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시안이 입법화 과정에 관계자들의 참여와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법은 다른 법 제정과 달리 순수 민간단체에서 연구 개발을 하고, 국회의 단체와 공동으로 노력하여 의원입법화를 추진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며,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국·내외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아울러 환경교육진흥법이 통과되기 전에 환경교육법시행령이나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을 작성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우리 학회 회원을 중심으로 개발된 환경교육진흥법 시안이 조속히 입법화되어 우리나라 환경교육 발전에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2. 환경교육전통법 전문의 환경부 검토 의견서

환경교육 전통법안	우리부 첨도안	비교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제1조(목적) 지식을 확양하고 환경문제 해결에 필요한 기능을 증진하여, 환경 친화적인 가치관과 생활양식을 확산시키는 교육을 함으로써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제2조(정의) (법안과 동일) 는 다음과 같다. ① “환경교육”이라 함은 국 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전 국민으로 하여금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 하는데 필요한 지식, 태도, 기능, 가치관을 습득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도록 하기 위하 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② “학교환경교육”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급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 법령의 일반적인 기술양식에 따른 변호 수정 • 환경기술과 관련되는 부분 삭제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제1조(목적) 지식을 확양하고 환경문제 해결에 필요한 기능을 증진하여, 환경 친화적인 가치관과 생활양식을 확산시키는 교육을 함으로써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제2조(정의) (법안과 동일) 는 다음과 같다. ① “환경교육”이라 함은 국 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전 국민으로 하여금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 하는데 필요한 지식, 태도, 기능, 가치관을 습득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도록 하기 위하 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② “학교환경교육”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급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 환경교육의 정의에서 환경기술인 력에 대한 교육을 제외하여 법안 의 내용과 정의를 일치시킴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제1조(목적) 지식을 확양하고 환경문제 해결에 필요한 기능을 증진하여, 환경 친화적인 가치관과 생활양식을 확산시키는 교육을 함으로써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회환경교육”이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제외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기 업, 대중매체,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선 국민 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 교육주체와 대상을 나열하는 것은 환경교육의 주체·직체의 다양화되 는 추세에 비추어 법 8·9의 정에 가 될 수 있음

환경교육 진흥법안	우리부 험토안	비 고
<p>제3조(국가의 임무) ①국가는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 2. 환경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개선 3. 환경교육을 위한 자료의 개발과 보급 4. 환경교육 인력 및 담당교원의 양성과 고용 5. 환경교육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6. 기타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한 시책 <p>②국가는 환경교육시책이 부진하거나 예산 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p> <p>③국가는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간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p>	<p>제3조(국가의 임무) ①(삭제)</p> <p>제3조(국가의 임무) ①(삭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정책기본법에 환경교육과 홍보를 추진하도록 국가에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선언적인 국가의 의무 규정을 별도로 둘 필요가 없음 · 법안의 국가의 임무는 환경교육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으로 제4조의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세부 내용으로 반영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법안 제4조에 관련 항 신설 <p>②(삭제)</p> <p>③(삭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보다 구체적인 지역 환경교육 활성화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법안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조정기능을 봄 때, 법안내에서 기능이 중복되고 있음으로 삭제함이 타당

환경 교육 활동 부안	우리부부 친토 안	비 고
제4조(환경 교육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제3조(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행정기관과의 협의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5년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차원의 환경교육종합계획과 지역 차원의 환경교육종합계획 구분하여 동조에 향신설하고 계획 수립의 주체와 계획 수립절차를 분명히 함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와 제14조2항에 따라 환경보전중·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p>(설명)</p> <p>②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지역의 혁신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교육종합계획의 내용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역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신설)</p> <p>③(설명)</p> <p>③(설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보전 중·장기종합계획에 환경교육 관련 내용이 기 포함되어 있어 따로 명시할 필요이 없음
④ 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기본조례와 환경보전증기계획에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환경교육종합계획과 지역환경교육종합계획간의 상호관계와 수립절차를 분명히 함 우리부안 제2항에 서와 같이 지역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을 명시하는 경우 별도로 기술할 필요가 없음

환경 교육 전통 법안	우리부 품토안	비 고
(신설)	<p>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교육종합계획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환경교육종합계획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개선 2. 환경교육을 위한 자료의 개발과 보급 3. 환경교육사와 및 담당교원의 양성과 연수 4. 학교, 평생교육시설 등 사회 각 단위에서 환경교육 강화방안 5. 계획에 따른 예산소요 전망 및 조달계획 6.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경교육진흥 시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안 제3조 국가의 업무를 환경교육종합계획의 내용으로 반영 · 법안 제3조 각호 중 제1호 계획수립은 삭제하고 제4호의 환경교육인력은 포괄적이므로 환경교육사와 환경담당교원으로 구체화하여, 법안 제7조 제5호의 내용을 계획의 내용으로 하며, 법안 제3조 제5호 예산 확보는 계획추진시 당연한 것으로 소요예산전망과 조달계획으로 수정함
(신설)	<p>제4조(환경교육종합계획의 시행) ①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 환경교육종합계획 또는 지역환경교육종합계획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 및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은 이를 소관 업무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p> <p>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교육종합계획 또는 지역환경교육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연도별 추진실적을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기타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시행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계획이행의 신효성을 확보

환경교육진흥법안	우리부 침투안	법 고
제5조(환경교육진흥위원회) ①국가는 국무총리 산하에 환경교육신흥위원회를 두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의결한다. 1. 제3조제1항의 시책 2. 제4조제1항의 환경교육증진협약 3. 제9조에 의해 조성된 환경교육진흥기금의 관리 및 운용 4. 기타 환경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환경교육진흥위원회) 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조정 또는 의결한다. 1. (삭제) 2.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교육증진 협의 심의·의결 3.의한 환경교육진흥기금 사용 계획안의 심의·의결 4.시책의 조정심의, 조정 또는 의결대상을 분명히 함으로써 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명확히 함 · 조문 삭제에 따름
②위원회의 사무국은 환경부장관 아래에 두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법안과 동일)	· 법안과 같이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는 경우 법안 제3조와 차별성을 갖는다. 하기 어려우므로, 필요한 사항은 해양규정으로 위임하는 등의 대로 구체화 필요
제6조(학교환경교육의 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일정시간 이상의 환경교육 의무화 2. 1호의 환경교육 실시 여부에 대한 장학지도 및 평가 3.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정교사(1급·2급) 자격증을 획득하려는 자의 환경교육 관련 강좌 이수 의무화 4. 중학교의 환경과학과 고등학교의 생태와 환경과목 담당교사의 자격 요건 강화 5. 초·중등 교육에 대한 환경교육 현지 수강회	제6조(학교환경교육의 진흥) ①.....초전..... 1.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시간.....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3.자에 대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경교육 이수.....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중·고등학교의 환경과목 담당교사 배치 5.대통령령이 정하는 환경교육 현지 연수 실시	· 법안과 같이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는 경우 법안 제3조와 차별성을 갖는다. 하기 어려우므로, 필요한 사항은 해양규정으로 위임하는 등의 대로 구체화 필요

환경교육 전통법안	우리나라 검토안	비고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1. 환경교육사격증제도의 도입 2. 환경교육사의 고용 촉진 3.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원 4.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 5.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사회환경교육 확대	제7조(환경교육사제도 등) ①국가는 사회환경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정에 대하여 환경교육사 자격제도를 둔다. 1.~5. (삭제) (신설)	.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에 관한 주요 내용을 환경교육사에 관한 내용이므로 이를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범안을 조정하고,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제11조에 명시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기술할 실익이 없으며,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사회환경교육의 확대는 구체성이 없어 선언적 의미에 그치므로 삭제하고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세부 내용으로 두는 것이 타당.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 교육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성기관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환경교육정책통합안		우리부 국토안	비 고
제8조(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 ①국가는 환경교육 및 사회환경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우수성이 검증된 환경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인증제를 도입할 수 있다.	제8조(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 ①환경부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대체로 평균이 성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인증하게 할 수 있다. ②필요한 경우 국가는 민간단체로 하여금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제를 도입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신설)	<p>①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 목적이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해당 전문기관의 관련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절차,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①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대체로 평균이 성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인증하게 할 수 있다.</p> <p>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 목적이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해당 전문기관의 관련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절차,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제9조(환경교육진흥기금) ①제4조에 따라 수립된 환경교육중합계획의 실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교육진흥위원회에 환경교육진흥기금을 설치한다.	제9조(환경교육진흥기금) ①제4조에 따라 수립된 환경교육중합계획의 실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교육진흥위원회에 환경교육진흥기금을 설치한다.	<p>제9조(환경교육진흥기금) ①제3조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의 일정액을 채원으로 하는 것은 예산운영상의 문제로 어려우며, 환경개선부담금법의 사용용도와도 거리가 있어 부적절함</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교육진흥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도의 새로운 재원) 2. 기금운용수익금 3. 국가이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 물품 기타 재산 	<p>제9조(환경교육진흥기금) ①제3조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의 일정액을 채원으로 하는 것은 예산운영상의 문제로 어려우며, 환경개선부담금법의 사용용도와도 거리가 있어 부적절함</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교육진흥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라 조성된 환경개선부담금 2. 정부 출연금 3. 기금운용수익금 4. 국가이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 물품 기타 재산

환경교육진흥법안	우리부 檢토안	비 고
<p>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교육사의 양성과 고용 촉진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제의 운영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운영 환경교육연구센터의 설치 및 운영 환경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지원 기타 환경교육 진흥을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p>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p> <p>1. (삭제) 2. 3. (법안과 같음) 4. 5. 6. (법안과 같음)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p>제10조(환경교육전담부서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전담부서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교육전담부서의 주요 업무·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삭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제령에 반영될 사항으로 삭제
<p>제11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고, 환경교육자료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필요한 경우 지방환경청 산하에 지방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p>		